

의안번호	2205828
의 퇴 인	김위상의원
회 답 일	2024.12.24.
추계번호	24D5345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제48호	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·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의 수사범위에 ‘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62조의4제1호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제62조의6에 규정된 범죄 ¹⁾ ’ 추가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 제48호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수사범위 확대(안 제6조제48호)

- 개정안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, 추가 수사·증거수집 활

1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62조의4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
제62조의6(양벌규정)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3 또는 제62조의4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동을 위한 경비 소요 및 수사활동비 지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다만, 개정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할 고용노동부 소속 사법경찰관리 및 조사업무 담당 공무원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어려움
 - 참고로, 현재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점검·수사하는 고용보험수사관 279명에게 매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